

## 구조전문위원회 (서면)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	심의일자	2023. 8. 16. ~ 8. 23.
건축종별	[ ] 신축, [ ○ 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		
건축주	현대○○○○		

대지현황	대지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		
	지번 : 433-1번지	관련지번 : 2-1 외 2필지	
	대지면적 : 467,887㎡	용도지역 : 일반공업지역, 미포국국산업단지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: 241,370.03㎡	건폐율 : 51.58%	층수 지하 : 층 / 지상 : 1층
	주용도 : 공장	구조 : 일반철골구조	세대수(호)/동수 : 세대 / 75동
	최고높이 : 25m	용적률 : 63.19%	연면적 : 295,670.3㎡

구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합의견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설기초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파일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기초(P17열+P18열)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할 것(A-3301 단면도)</li> <li>2. 부재설계시 응력비가 0.95인 부재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할 것 - MT1BC(0.995), CRG1(0.955) 등</li> <li>3. KDS 14 31 10 4.1.1 세장비 제한 규정(다만, 인정력에 기초하여 설계되는 부재의 세장비는 가급적 300을 넘지 않도록 한다. 이 제한은 인정력을 받는 강복이나 매달린 부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)에 적합하게 일부 부재를 재검토할 것</li> <li>4. 동일한 제원(Φ 165.2 X 8t)의 파일내력이(일반 fpt = 300KN/ea, PIT층 fpt=500KN/ea)상이하하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- S-9901</li> <li>5. Rotary pile 지지력 산정 결과치가 과해 보임, 재검토 바람</li> <li>6. 지하 외벽 중 BM4 상부 구속조건이 자유단이 아닌지 확인 바람</li> <li>7. PEDESTAL 배근 중 크기가 3M 이상 규모가 되는 것은 일반 주각 배근 형식으로 표기하기 어려워 보임, 재검토 요함</li> <li>8. Tie Bar 배근 표기시 간격이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바람</li> <li>9. 구조도상에 WB로 표기된 큰 보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음</li> <li>10. 구조계산서 목차에 페이지 번호를 기입하여 구분하기 용이하도록 할 것</li> <li>11. 지역별 풍속은 기존 '표' 에서 '지도' 로 변경되었으니 본 대지의 위치도 지도에 표기하고 풍하중 등고선을 확인할 것</li> <li>12. 헬리컬파일에 대한 가정 지지력 단위를 통일하여 혼선이 없도록 할 것(tonf → KN)</li> <li>13. 철골보 부재 표기시 부재명을 함께 표기할 것</li> <li>14. 파일의 위치를 인발과 압축지배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할 것(치수로 표기)</li> <li>15. SHN으로 표기된 재질에 맞게 부재검토도 동일한 재질로 할 것</li> <li>16. 베이스 플레이트 앵크볼트는 구조계산 근거에 맞게 J형으로 변경하던지 아니면 도면에 맞게 구조계산 근거를 변경하던지 할 것</li> <li>17. 모든 접합부에 대한 계산 근거를 첨부할 것(특히, 가새접합부)</li> </ol>

심의결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 ] 원안 의결    [ ○ ] 조건부 의결    [ ] 재검토 의결    [ 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</li> <li>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li> <li>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li> <li>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</li> </ul>
------	--